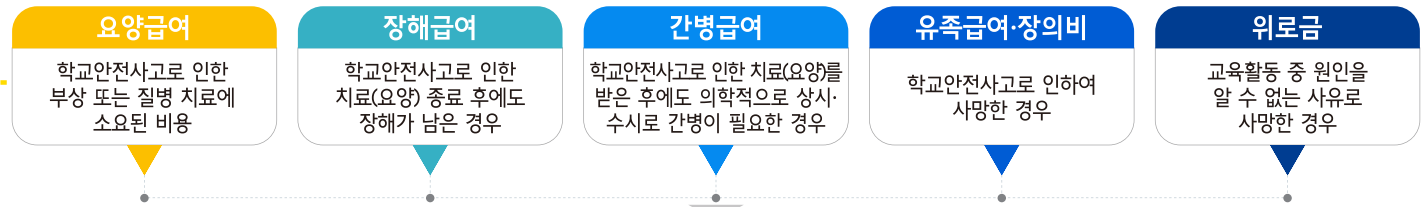


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!!

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신청하세요!

『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(이하 학교장)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**생명·신체에 입은 피해**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.

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원대상 학교



『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공제급여 종류별 산정·지급

* 대상 학교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
공제급여의 종류 중 '요양급여' (치료 비용) 청구 방법

01 학교안전사고 발생

- 사고통지는 공제가입자인 **학교장**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**지체 없이(7일 이내)** 공제회로 통보
- 통보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
 - 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→ 사고 등록 → 출력하여 학교장 서명 → 스캔하여 파일 첨부 → 통보 처리 [통보 미처리 시 공제회로 전송 불가]
 - ②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→ 사고 등록 → 입력한 학교장 휴대전화로 안내메세지 발송되면 → 학교장은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온라인 서명 → 자동 통보 처리

[주의] 학교장은 통지를 **지체 없이** 하지 아니하거나 **거짓으로** 통지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[학교안전법 제72조]

02 피공제자 및 청구인은 치료 후 청구서류 준비

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- 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 (처방전에 의한 경우)
- 진료비 세부명세서
- 청구인(보호자) 통장 사본
- 주민등록표등본
- 청구액 50만원 이상 ▶ 진단서 추가

*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03 청구서 작성

- 청구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
 - ①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실 경우 :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 (오프라인, 온라인 선택)
 - ②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공제회로 직접 제출하실 경우 :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 (오프라인, 온라인 선택)

*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청구서식 출력하여 수기 작성 가능

04 공제회로 서류 제출

- ② ~ ③ 서류를 취합하여
 - 오프라인 청구 시: 등기 우편 발송
 - 온라인 청구 시: 학교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에 파일 첨부

*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→ 3년 (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.)



05 심사

-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(필요 시 연장 및 서류 보완 요청 가능)



06 결과 통보

- 지급 여부 결정
- ▶ 청구인에게 알림 문자 발송
- ▶ 공제회에서 학교장에게 공제급여 결정통보서 발송
- ▶ 학교장은 청구인에게 전달



요양급여(치료 비용) 지급 범위

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

구분	급여	비급여
요양급여 지급 대상 여부	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	일부 항목 지급
	지급대상	

- 급여**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
- 비급여**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항목
- 일부 항목 지급** 『학교안전법』 시행규칙 제2조2 [별표]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규정된 항목

*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중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로 잘못 기재된 경우이거나 급여 항목이지만 치료 항목이 세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. (예: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, 응급중상이 아니거나 휴일 및 야간에 일어나지 않은 사고로 내원한 응급실의 응급의료관리료 등)

[별표]

구분	치료 항목 및 한도			
	보철	치아 항목 및 한도		
치아 보철 (한 대당)	보철	400,000원 범위 내 (2회 인정)		
	레진	120,000원 범위 내 (1회 인정)		
	포스트	124,000원 범위 내 (1회 인정)		
자기공명영상 (MRI)	임플란트	2,000,000원 범위 내 (1회 인정) 단, 일반 보철 불가한 경우		
	1회 인정	무통제	인정	흉터 제거술 회 인정
초음파	인정	물리치료 (도수치료, 제외중력피치료, 신장분사치료 등)		불인정

-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장 자주 문의주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.
-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행 전 해당 여부 문의
-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흉터수술(시술) 등 항목에 따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필요 여부 문의



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

자해 및 자살, 의료기관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,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, 가해자로부터의 배상, 교육활동이 아닌 경우,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 등

